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안

1. 의결주문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행정절차법(법률 제16778호, 2020. 6. 11. 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법행정과 관련한 법원의 정책, 제도 및 계획에 대한 행정예고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예시 제시함
(안 제2조)
- 행정예고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 시행을 위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4.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안

붙임과 같음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열람·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1. 각급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정책·제도 및 계획(입법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각급 기관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정책·제도 및 계획
3. 각급 기관 청사 출입관리에 관한 정책·제도 및 계획

제3조(행정예고의 방법) ①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각급 법원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법원행정처는 법원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의견제출 기간, 담당자, 의견제출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할 때 정책안(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행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각급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내규, 예규 등에 근거를 둔 정책등의 수립·시행·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내규, 예규 등을 제2항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각급 기관장은 정책·제도 및 계획을 입안하여 행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① 각급 기관장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법원공보를 통하여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임 및 통보) ① 각급 기관은 행정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장은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 소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6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
행위 등」 행정예고

■ ○○법원공고 제 호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법원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2. 주요내용

-

3. 진행절차

-

4. 의견제출

- 이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
법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 주소
 - 수신자 : ○○법원장, 참조 : ○○○○실 ○○○○○○실
 - 전화 : 담당자 전화번호, FAX 담당자 팩스번호
 - E-mail : 담당자 이메일 주소@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법원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법원이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 년도 ○○법원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① 총 건수	② 예고 대상			③ 예고 매체 (중복 표기)				④ 예고 기간	
	내규	예규	기타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작성 방법>

- ① 총 건수는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 ② 예고대상 : 내규,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

○○법원장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247